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4.1. 공포, 2025.10.2. 시행, 2026.4.2.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안 제16조의2제2항 개정, 안 제16조의2제3항 및 안 제16조의3 신설)

-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17조 개정)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안 별표 1 개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중 상담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업무의 재위탁)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41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 재위탁 업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을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재위탁받”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부 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생략)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는</u>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②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u> ----- ----- -----.
1. <u>법 제33조제2항</u> 에 따른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1. <u>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u>
<u><신 설></u>	<u>제16조의3(업무의 재위탁)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41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1. (생략) <u><신설></u> 12. ~ 14. (생략) ②·③ (생략)	2. 재위탁 업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재위탁 받----- ----- -----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3. ~ 15. (현행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연 락 처	(044) 202 - 3353